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으로
과태료 크게 인하**

무허가건물을 양성화할수 있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있음에도 과태료가 비싸서 양성화하지 못하고 안타까와 하기만 하였습니다.

협회에서도 건설부와 농수산부 및 관계요로에 수차 과태료를 현실에 맞게 인하하여 줄 것을 건의하여 왔다. 다행히 작년 정기국회에서 법률안이 개정되고 83. 12. 31 법률 제3719호로 공포된 후 84. 3. 31부터 대통령령 제11397호로 시행령중 개정령이 공포되었다.

당초에는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하는데 평당 과태료가 약 18, 276 원이 (지역 구조에 따라 다르다) 소요되었으나 이번 개정으로 당초 과태료의 3.6%인 508 원 정도로 대폭 삭감되었다. 또 기왕에 과태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시장군수는 즉시 차액을 환불하도록 하였다.

이렇게 과태료가 크게 인하된 것은 과태료기준이 배 평방미터당 30만원이 10만원으로 인하되었고 용도별 가중치가 축사의 경우 당초 0.6에서 0.05로 12분의 1로 크게 인하되었기 때문

이다.

주요골자를 보면 다음과 같다.

◇ 주요골자

가. 종전에는 재개발구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와 도시계획시설안에 있는 대상건축물에 대하여는 양성화혜택을 부여하지 아니하였으나, 법의 개정으로 동 구역·지구 또는 시설안에 있는 건축물 중 일부 건축물에 대하여는 일정한 조건하에 양성화될 수 있도록 하였는바,

- (1) 재개발구역 및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안의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정하여 이를 해당 사업이나 계획상 존치되는 건축물이나 동 사업계획에 따른 공공시설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건축물 등으로 하고,
- (2) 도시계획시설안의 건축물로서 그안에 있는 대상건축물이 양성화될 수 있는 도시계획시설의 종류를 정함(습 제 2 조의 3).

나. 대상건축물 신고기간을 1984년 3월 31일 까지에서 198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함(영 제 4 조).

다. 종전에는 대상건축물을 신고하는 경우 건축물의 규모에 관계없이 그 신고서에 설계도서 및 현장조사서를 일률적으로 모두 첨부하도록 하였으나, 앞으로는 연면적 200 제곱미터 미만이고 2층 이하인 건축물의 경우에는 설계도서 중 입면도·주단면도는 첨부하지 아니하도록 함(영 제 5 조 및 별표 2).

라. 대상건축물로서 건축법상 그 대지 등이 도



『이 기회에 모두 양성화를...』

로와 일정거리 이상 접하여야 하는 등의 관계 규정에 적합하고 건축물의 구조안전·위생 및 방화와 도시계획사업의 시행에 현저한 지장이 없는 건축물은 양성화 대상이 되나, 또한 그 밖에도 소방상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어 양성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소방차의 출입이 가능한 폭 3미터 이상의 도로로부터 60미터 이내의 보행거리에 있고, 소방대원의 출입이 용이한 폭 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안의 건축물로 규정함(영 제 7 조 제 2 항).

마. 대상건축물의 양성화를 위하여 당해 건축물을 신고한 자가 부담하는 과태료의 산정기준의 하나인 용도별 가중치중 일부 용도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그 가중치를 대폭 인하 조정하고, 아울러 법의 개정으로 과태료의 액이 종전 금액의 3분의 1 이하로 인하 조정되는 대상건축물의 범위를 정함(영 제 10 조 제 7 항 및 별표 1).

과태료 산출근거

구 분	내 역	가중치	비 고
용 도	축 사	0.05	
벽 구조	세멘브러크조	0.45	
지붕구조	슬 레 이 트	0.65	
규 모	500평	0.75	
대상지역	경기 7 지역	0.7	
용도지역	기 타 지 역	0.2	

$0.05 \times 0.45 \times 0.65 \times 0.75 \times 0.7 \times 0.2 \times 1,653m^2$
 $(500 \text{ 평}) \times 100,000 \text{ 원} = 2,538 \text{ 원 (평당 508 원)}$

금년내로 무허가건축물들을 양성화해서 정당한 재산을 보호받고 이번 정부의 특별조치에 협조하여 이번 기회에 모두 양성화하도록 여야하겠다.

자세한 내용은 시군이나 본회에 문의하면 된다.

**역사(歷史)란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 준다**

작년 10월의 브로일러 불황으로 금년에 와서 육계값이 비교적 높게 형성되어 왔다.

한때 브로일러업계는 재생불능이라고 판정해서 수입문제까지 검토되었었다. 비닐계사의 단계적철수, 사료의 신용판매감소 등으로 십사리 생산량이 증가될 것 같지 않다고 판정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3월 육계전기사료가 23,500여톤으로 2월보다 무려 82%나 증가하였으며 4월에도 생산량은 더욱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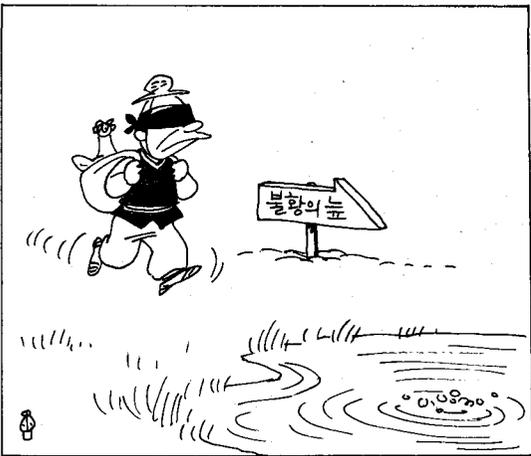
는 육용초생추가 2월 9,356천수에서 3월에는 11,577천수로 24%증가한데 이어 4월에도 계속 증가하고있기 때문이다.

물론 6월부터는 성수기에 소비도 증가되고 이제 돼지고기 가격도 상승되어 닭고기가격형성에 유리한 점도 있으나 종합적으로볼때 6월에는 또다시 큰폭으로 가격 하락이 예상되고 있다. 물론 이번에는 정부에서도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수매비축에 나서줄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정부가 모든 것을 해결해주리라 믿고 계속 생산에만 주력한다는 것도 문제이다. 불황이 옛 그제 같은데 또 불황이 온다니 참으로 한심하지 않을수 없다.

양계협회가 초생추 출하수수와 배합사료생산량을 신속히 집계하여 관측엽서를 발행하는데도 이용하는 사람이 적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수 없다. 불황이 오면 다음엔 호황이 오겠지, 그리고 그 다음엔 불황이 오고, 이렇게 될대로 되라고 체념하는 것이 양계산업발전의 암이(癌) 아닐수 없다.

헤겔은 말하기를 '역사란(歷史) 역사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다는 것을 가르쳐준다'고 하였는데 우리양계업자에게도 적용되는 말 같다.

불황과 호황의 연속은 양계업자에게 아무것도 가르쳐주지 않는 것인가?



무엇이 내게 유리한가 보다 무엇이 옳은가를 생각해야

우리는 개개인을 만나서 충분히 의견을 종합한 후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개최하여 보면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와는 전혀 반대방향으로 의견이 결정되는 경우를 종종 경험한다. 회의를 주최한 주최측으로서는 당황하지 않을수 없다.

중요한 법률이나 제도의 개선에 있어서 있어서도 개인적으로는 반대하면서도 그 결과는 대세에 따라서 찬성하는 쪽으로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흔히 있음을 보아왔다. 대세라는 것이 옳고 그른 것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되기 보다는 목소리가 큰 몇몇 사람에 의해 결정되어지기도 한다.

잘못의견을 말했다가는 옳고 그름을 따지기에 앞서 새까만 놈이 감히 내게 도전하다니 나쁜 놈이라고 몰아부치면 그 분야에서 숙청이 되고 만다.

그래서 올바른 판단과 결정을 할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길러 주기 보다는 회의진행법과 회의과피법등 세부적인 기술을 배워주는 것이 훨씬 쓸모있고 유능한 사람으로 대접받게 된다.

우리가 외국인의 목소리에 너무 신경을 쓸필요도 없지만 그들이 객관적으로 우리를 비평하는 소리를 귀담아듣고 시정해야할 것은 시정해 나가야 발전이 있을수 있다. 한국인은 어떤 문제를 결정함에 있어 이치적이기보다는 감정적이고 어떤 것이 옳으나보다는 어느 것이 나나 내가 속해 있는그룹, 단체에 유익하냐에 의해 결정한다고 한다.



조세감면 규제법중 일부 개정

축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은 법인세)감면혜택이 86년말로 모두 종료된다. 이제는 세금에 대한 관심을 가져 정부의 조세정책이 어떤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으며 양측가들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양돈업계는 벌써 많은 양돈장이 법인체로 회사조직을 하여 운영하여가고 있는데 비하여 양계장은 아직 대부분이 개인농장 형태이다. 물론 각기 장단점이 있겠으나 앞으로는 유통구조의 개선에 따라 일정규모 이상은 법인체로 함도 유리하겠다.

정부는 이번 조세감면규제법을 일부 개정하였는데 그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다.

자연히 봉당적 근성이 있어 사색당파로 갈라져 별것 아닌 것도 어느 것이 우리편에 유익하나 하는 것 때문에 서로 싸우게 된다. 지연, 혈연, 선후배 등은 물론 군대동창, 학원동창, 등 인연이 닿을수 있는 것은 모두 동원하여 봉당을 구성하고 그 구성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게 된다. 형님, 동생, 아저씨, 아주머니로 통하는 범위내 집단의 이익만을 위해서 노력한다면 발전은 그만큼 늦어지고 경우에 따라서는 퇴보할수 밖에 없다.

이번 축산법개정에 있어서도 대규모, 소규모 업자간의 이해가 엇갈리고 더군다나 도시상업 자본으로 대규모축산을 계획하는 쪽의 입장이 있다. 비단 직접 축산을 하는 양축가의 문제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사료, 동물약품, 부화, 가공처리업계는 물론 행정당국이나 협회의 업무에도 많은 변화를 가져올수 있다.

이번 일로 축산업계가 사색당파로 나뉘어 서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전투구하기 보다는 무엇이 옳은가, 무엇이 축산업계 발전을 위하고 국민감정에도 맞는 것인가를 토의해야 될것이다.

◇ 조세감면규제법 개정 이유

안정성장의 지속과 우리나라 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는 차입금 등 간접금융에 의한 기업자금조달보다는 자기자본의 증대가 시급하므로 증자기업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함으로써 기업의 유상증자를 적극 유도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 투자준비금 등을 손금으로 인정하여 농어촌 소득증대를 촉진하고, 신기술사업을 하려는 중소기업에 대한 신기술자본투자를 활성화하며, 국내에서 외국인 방문객 등의 국내상품 구매를 늘릴 수 있도록 세계상 지원을 하려는 것임.

◇ 주요골자

1. 종업원 지주제의 확산을 위하여 우리 사주 조합원이 자기 회사의 주식을 취득할 때에 소득세 공제율이 주식 취득가액의 5 퍼센트인 것을 15 퍼센트로 인상하고 조합원의 급여액 외의 여유 자금으로 자기회사 주식을 취득할 때에도 세액공제를 하도록 함(법 제 7 조의 2)
2. 중소기업인 신기술사업에의 투자를 활성화 하기 위하여 신기술사업 투자회사(Venture Capital Co.)의 투자양도차익을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시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도록 함(법 제 18 조의 2).
3.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과 자본증자를 유도하기 위하여 1985 년말까지 유상증자한 기업에 대하여는 유상증자액에 일정율을 곱한 금액을 증자한 년도부터 1986 년까지 매년 법인세과세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함(법 제 55 조).
4. 농어촌 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농공지구 또는 농어촌 부업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 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 가공공장을 건설·운영하는 자에 대하여는
 - 가. 매년 농업용 자산가액의 15 퍼센트 범위 안에서 투자준비금을 설정할 때에 비용으로 인정하고(법 제 40 조의 2),
 - 나. 매년 비용으로 처리되는 사업용 자산의 감가상각비를 일반의 경우보다 100 퍼센트 추가하여 인정하도록 함(법 제 40 조의 3).
5. 외자도입법의 개정에 맞추어 외국인이 국제 금융기구와 공동으로 출자한 외국인 출자 기업 및 외국인 출자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기간을 조정하여 현재 5 년간 100 퍼센트 감면하고 그후 3 年間 50 퍼센트 감면하던 것을 5 년간만 100 퍼센트 감면하도록 함(법 제 68 조).



6. 외국인 관광객 등이 국내에서 구입하여 출국할 때에 가지고 나가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 및 특별소비세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법 제 74 조의 2).
 7. 중소기업 계열화 촉진을 위하여 모기업체가 수급기업체에 물품제조를 위탁할 때에 작성하는 계약서에 대하여는 인지세를 면제하도록 함(법 제 81 조). 〈법제처 제공〉
- 정부는 이외에도 농어촌부업단지에서 농어촌 소득원개발사업을 영위하거나 농수산물가공공장을 건설 영위하는 경우 재산세, 취득세도 감면할 계획으로 있어 앞으로 도계장이나 간단한 양계산물의 가공공장을 이에 연결하는 방법도 연구될 수 있을 것이다.

계란·닭고기 소비는 양계 가족부터